

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내용증명

본 통지서의 발신인(이하 '발신인'이라 함)

성 명 :

주 소 :

연락처 :

본 통지서의 수신인(이하 '수신인'이라 함)

성 명 :

주 소 :

연락처 :

발신인은 임차인으로서 수신인인 임대인 000 와 도 시 동 000 번지 A 아파트 000 동 000 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(202 ~ 202)에 체결하였습니다.

발신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(202 . 00 . 00.)로부터 2 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고, 임대차계약 종료일(2023. 00. 00.)에 수신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할 예정입니다.

수신인은 계약 만료일에 맞춰 금 000000 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시기 바라며, 만약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더불어 임대인이 위 임대차목적물을 반환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보증금을 다 반환 받을 때까지 법정이자율(연 5%)을 적용한 지연손해금(지연이자)를 배상해야 합니다.

- ◆ 지연손해금 = 임대차보증금 X 0.05 X 지연기간

수신인이 보증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실 때까지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되므로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.

2023 년 00 월 00 일

발신인 : _____(인)

연락처 :